

【2025학년도 제27차】

규정심의위원회





제27차 규정심의위원회 안건

- 일 시: 2026. 2. 12.(목), 오후 2시
- 장 소: 문화관 발전전략회의실(문화관 301호)
- 안 건

연번	안건	입안부서	배석	예상시간
1	심의 「대학원 학칙」 개정 건	교학팀	교학팀장	'10
2	심의 「평생교육원규정」 개정 건	평생교육원 (전주)	교육실장 기획처장	'20
3	심의 「사이버평생교육원규정」 개정 건			
4	심의 (연관) 「직제규정」 개정 건			
5	심의 「석좌교수규정」 개정 건	교원인사팀	교원인사팀장	'20
6	심의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개정 건	학사관리팀	학사관리팀장	'20
7	심의 「시험 및 성적에 관한 규정」 개정 건	학사관리팀	학사관리팀장	

○ 추후 일정

규정관련 심의기구(순)	비고
교무위원회	- 2026. 02. 23.(월)
대학평의원회	- 학칙 해당(일정 미정)
법인이사회	- 2026. 2.26.(직제, 인사, 보수에 관련한 규정 해당)

2025학년도 규정심의위원회 종료

- 학칙 및 직제규정: 입안예고공청회 3일 이상 의견조회 시행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대학원 학칙」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교학팀		관련부서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 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 사항 있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교육대학원 6주기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6주기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입학정원(49명) 조정 및 재배정 • 전문간호사과정 정원 명시 • 외국인전담학과 학칙 반영 및 명시						
관련근거 (관계법령)	• 대학원위원회 심의(2026.02.14.)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 【별표 1】대학원별 학과 및 정원						
	- 6주기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결과 반영						
	- 감축 인원: 15명						
	- 입학정원 조정						
	조정대학원		캠퍼스	과정	배정 인원	기존 인원	최종 인원
	FROM	TO					
	교육대학원 (-15명)	일반대학원 (+15명)	전주	석사	7	88	95
				박사	2	43	45
			진천	석사	3	10	13
박사				3	3	6	
			계	15	144	159	
※ 총정원(269명)은 변동 없음							
• 일반대학원 전문간호사과정의 입학정원(20명) 명시							
• 외국인전담학과(진천캠퍼스 예술학과) 학칙 반영 및 명시							
기대효과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입안예고 공청회			전자공청회			
	해당사항 있음			해당사항 있음			
첨부자료	•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①각 대학원의 학과 및 학생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06., 2018.6.25., 2019.3.21., 2019.8.1.,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1.12.27., 2022.4.14., 2022.9.30., 2022.12.16., 2023.2.20., 2023.5.18., 2023.11.24., 2024.5.30., 2024.10.28., 2024.12.26., 2025.01.21., 2025.2.27., 2025.4.29., 2025.5.30., 2025.6.26., 2025.8.25., <u>2025.11.13.</u>)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변경 2002.2.15., 2004.1.15) 1. 교육부장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개정 2010.3.3.)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학 제 (2006.8.4.) 5.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신설 2025.6.26.) <u><항 신설></u>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①각 대학원의 학과 및 학생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06., 2018.6.25., 2019.3.21., 2019.8.1.,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1.12.27., 2022.4.14., 2022.9.30., 2022.12.16., 2023.2.20., 2023.5.18., 2023.11.24., 2024.5.30., 2024.10.28., 2024.12.26., 2025.01.21., 2025.2.27., 2025.4.29., 2025.5.30., 2025.6.26., 2025.8.25., <u>2025.11.13.</u>) ② (현행과 같음) <u>③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각 대학원은 외국인유학을 위한 전담학과를 운영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별표 1】 대학원별 학과 및 정원 1. 일반대학원 - 전주캠퍼스					【별표 1】 대학원별 학과 및 정원 1. 일반대학원 - 전주캠퍼스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과	입학정원	학과	입학정원		학과	입학정원	학과	입학정원
인문사회	교육학과		교육학과		인문사회	교육학과		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학과	
	글로벌경영학과		-			글로벌경영학과		-	
	심리운동학과		심리운동학과			심리운동학과		심리운동학과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심리학		심리학			심리학		심리학	
	-		경영학과			-		경영학과	
	-		관광경영학과			-		관광경영학과	
	사회적경제·경영학과		사회적경제·경영학과			사회적경제·경영학과		사회적경제·경영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		-			-		-	
	예술경영학과		-			예술경영학과		-	
	놀이심리재활학과		놀이심리재활학과			놀이심리재활학과		놀이심리재활학과	
자연과학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자연과학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외식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	
	관광문화경영학과		-			관광문화경영학과		-	
	약학과		약학과			약학과		약학과	
	식품생명공학과	88명	식품생명공학과	43명		식품생명공학과	95(20)명	식품생명공학과	45명
	한약학과		한약학과			한약학과		한약학과	
	-		-			-		-	
	간호학과(가정전문간호사)		-			간호학과(가정전문간호사)		-	
	간호학과(감염관리전문간호사)		-			간호학과(감염관리전문간호사)		-	
	재활학과		-			재활학과		-	
	-		-			-		-	
	물리치료학과		-			물리치료학과		-	
	전기전자공학과		-			전기전자공학과		-	
	동아시아조경학과		조경학과			동아시아조경학과		조경학과	
	자동차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자동차공학과	
공학	제약·화장품공학과		제약·화장품공학과		공학	제약·화장품공학과		제약·화장품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			소방·안전공학과		-	
	-		-			-		-	
의학	수소모빌리티공학과		수소에너지공학과		의학	수소모빌리티공학과		수소에너지공학과	
	수소에너지공학과		수소에너지공학과			수소에너지공학과		수소에너지공학과	
	한의학		한의학			한의학		한의학	
예체능	체육		체육		예체능	체육		체육	
	-		-			-		-	
	태권도학과		태권도학과			태권도학과		태권도학과	
계 31개 학과 88명					계 31개 학과 95명				
<주석 신설>					※ ()안 인원은 가정전문간호사과정(10명), 감염관리전문간호사과정(10명) 정원				
- 진천캠퍼스					- 진천캠퍼스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과	입학정원	학과	입학정원		학과	입학정원	학과	입학정원
인문사회	경영학과		-		인문사회	경영학과		-	
자연과학	생명과학과		-		자연과학	생명과학과		-	
공학	컴퓨터공학과	10명	-	3명	공학	컴퓨터공학과	13명	-	6명
	건설공학과		건설융합시스템학과			건설공학과		건설융합시스템학과	
예체능	스포츠융합학과		스포츠융합학과		예체능	스포츠융합학과		스포츠융합학과	
	예술학과		-			예술학과*		-	
계 6개 학과 10명					계 6개 학과 13명				
(문구삽입)					※ *예술학과는 외국인전담학과임				

현 행			개 정(안)		
2. 교육대학원 - 전주캠퍼스			2. 교육대학원 - 전주캠퍼스		
학과	전공	입학 정원	학과	전공	입학 정원
교육학과	특수교육, 상담심리, 체육교육, 무용교육,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60명	교육학과	특수교육, 상담심리, 체육교육, 무용교육,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45명
계	7개 전공	60명	계	7개 전공	45명
- 이하 생략-			- 이하 생략-		
<u><신설></u>			<u>부 칙</u> 이 학칙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직제규정」		
입안형태	☐ 제 정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9조(부속기관장) ①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u>필요에 따라 자격을 갖춘<문구 삭제>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단서 신설></u>	제29조(부속기관장) ①부속기관의 장은 <u>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u>
부원장 <조 신설> - 1안	제29조의2(부원장 등) 부속기관은 <u>부단장, 부분부장,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로 보한다.</u>
부원장 <항 신설> - 2안	③각 부속기관에는 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사고가 있을 때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u>부기관장을 둘 수 있으며, 부기관장은 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u>
<신설>	<u>부 칙(학교법인 우석학원- (2026.00.00.)호)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참고] 「우석학원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92조(부속기관)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각 부속기관에 장을 두며, 각 기관의 장은 <u>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u> ③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부속기관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u><항 신설></u> ④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7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⑤각 부속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분장업무 등은 따로 정한다.(=	제92조(부속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각 부속기관에 장을 두며, 각 기관의 장은 <u>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 ④각 부속기관에는 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사고가 있을 때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부기관장을 둘 수 있으며, 부기관장은 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u>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u> ⑤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7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⑥각 부속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분장업무 등은 따로 정한다.
<신 설>	<u>부칙(개정승인) - 이사회의결 ()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평생교육원규정」		
입안형태	☐ 제 정		

「평생교육원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안	현행	개정(안)
<u>1안</u>	제5조(원장 및 부원장) ①원장은 <u>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명한다.</u> 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부원장은 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명하며,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결위 시 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u><단서 신설></u>	제5조(원장 및 부원장) ①원장은 <u>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로 보하되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명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부원장은 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명하며,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결위 시 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u>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보한다.</u>
<u>2안</u>	제5조(원장 및 부원장) ①원장은 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u>부원장은 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명하며,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결위 시 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u>	제5조(원장 및 부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u>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결위 시 원장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부원장을 두며, 직원 또는 교원 중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u>
	<u><신설></u>	<u>부칙</u> <u>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사이버평생교육원규정」		
입안형태	☐ 제 정		

「사이버평생교육원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안	현 행	개 정(안)
1안	제4조(원장 및 교직원) ①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u>전임교원 중에서</u>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관리팀장은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명하며, 원장의 명을 받아 교육원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원장 및 교직원) ①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u>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로 보하되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명한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2안	제4조(원장 및 교직원) ①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u>전임교원</u>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u><단서 신설></u> 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관리팀장은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명하며, 원장의 명을 받아 교육원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원장 및 교직원) ①원장은 <u>교원 또는 직원</u>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u>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석좌교수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교원인사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법인이사회	● 심의 해당		
대학평의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학기 도중 임용이 완료되는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해당 학기의 말일(1학기 8월말, 2학기 2월말)까지 임용 ● 석좌교수 주당 강의 가능 시간 정의		
관련근거 (관계법령)	● 「교육공무원임용령」제5조의3(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 ②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 「고등교육법시행령」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강사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이 항에서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강사와 겸임교원등(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매주 6시간 이하를,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 이하를 각각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사와 겸임교원등(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12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5조(임용기간) 단서 조항 내용 신설 -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 제9조(보수) - 주당 6시간까지 강의를 할 수 있으며, 학과 사정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 3시간 이내 강의할 수 있음		
기대효과	● 학기 도중 완료되는 교원의 강의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석좌교수규정」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석좌교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용절차)석좌교수는 <u>처장</u> , 학장 또는 기금 출연자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용한다.	제4조(임용절차)석좌교수는 <u>교무위원</u> , 학장 또는 기금 출연자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용한다.
제5조(임용기간) ①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u><단서 신설></u> ②임용 기간이 만료된 석좌교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재임용할 수 있다. 1. <u>처장</u> 또는 학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2. 기금 출연자의 추천이 있는 경우	제5조(임용기간) ①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u>다만,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u> ②임용 기간이 만료된 석좌교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재임용할 수 있다. 1. <u>교무위원</u> 또는 학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2. 기금 출연자의 추천이 있는 경우
제9조(보수) ①석좌교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업적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석좌교수는 주당 <u>3시간</u> 이내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으며, <u>강의료는 시간 강의료에 준하여 지급한다.</u> <u><항 신설></u>	제9조(보수) ① 좌동 ②석좌교수는 주당 <u>6시간</u> 이내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으며, <u>학과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3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강의할 수 있다.</u> ③ <u>제1항의 보수를 받지 않는 석좌교수가 정규 교과를 강의하는 경우, 강의료는 강의료 지급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u>
<u><신설></u>	<u>부 칙(학교법인 우석학원- (2026.00.00.)호)</u> <u>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학사관리팀	관련부서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법인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부득이한 사유로 재수강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규정 개정		
관련근거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불가피하게 재수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재수강할 수 있도록 변경		
기대효과	•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시 교과목의 재수강 기회 부여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8조(재수강신청) ①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80점 미만인 경우에 한해, 동일과목(과목명과 과목번호가 동일한 과목)이거나 대체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으로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u><신설></u> ②재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대체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에는 학과(부)에서 정한 대체과목 지정표를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0.)	제8조(재수강신청) ①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80점 미만인 경우에 한해, 동일과목(과목명과 과목번호가 동일한 과목)이거나 대체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으로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u>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재수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재수강할 수 있다.</u> ③재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대체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에는 학과(부)에서 정한 대체과목 지정표를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0.)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시험 및 성적에 관한 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학사관리팀	관련부서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법인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재수강 성적 원칙은 유지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위한 규정 개정		
관련근거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90점미만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		
기대효과	•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고 부득이한 상황에 대처하는 유연성 확보 •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객관성 유지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시험 및 성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시험 및 성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1조(재수강성적의 처리) ①이미 이수한 성적과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 중 상위 성적을 인정하고 하위 성적은 무효로 한다. 다만, 성적이 동일할 경우 재수강 성적으로 인정한다. ②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90점미만으로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재수강성적이 상위인 경우에는 당초의 해당 학기 성적 평균 평점을 다시 산출한다. ④재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당초의 해당 학기의 성적 경고는 계속 유효하다. ⑤제1항의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에는 재수강한 교과목입(R)을 표기한다.	제11조(재수강성적의 처리) ①(현행과 같음) ②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90점미만으로 한다. <u>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u> ③ ~ ⑤(현행과 같음)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우석대학교 진천RISE사업단 운영 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진천RISE사업단	관련부서	기획팀, 진천RISE사업단내 부서																								
부서간 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재학생 취·창업 관리 운영 조직 신설 •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관련 위원회 명칭 정비를 통해 위원회 기능과 역할의 명확화																										
관련근거 (관계법령)	• 충북RISE센터의 운영성과 관리 강화 권고에 따라 사업성과의 자체관리 및 점검 체계 구축과 월별 성과 관리·점검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위원회 구성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table><tr><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 (안)</th><th>개정 사유</th></tr><tr><td>제5조(구성)</td><td>진천RISE사업운영본부 내 센터 구성</td><td>'지역정주지원센터' 신설</td><td>지역 맞춤형 취·창업 지원 조직 강화</td></tr><tr><td>제11조(신설)</td><td>(기존 AIS포츠센터)</td><td>지역정주지원센터 업무 신설</td><td>신설 조직의 소관 업무 분장</td></tr><tr><td>제11조~제26조</td><td>조문 번호 (제11조~제26조)</td><td>조문 번호 변경 (제12조~제27조)</td><td>'지역정주지원센터' 조문 삽입에 따른 순연</td></tr><tr><td>제27조</td><td>사업성과관리위원회</td><td>'자체점검위원회' 로 명칭 변경</td><td>위원회 명칭 현실화 및 기능 명확화</td></tr><tr><td>제28조~제29조</td><td>조문 번호 (제28조~제29조)</td><td>조문 번호 변경 (제29조~제30조)</td><td>위원회 명칭 변경 및 조문 순연</td></tr></table>			구분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5조(구성)	진천RISE사업운영본부 내 센터 구성	'지역정주지원센터' 신설	지역 맞춤형 취·창업 지원 조직 강화	제11조(신설)	(기존 AIS포츠센터)	지역정주지원센터 업무 신설	신설 조직의 소관 업무 분장	제11조~제26조	조문 번호 (제11조~제26조)	조문 번호 변경 (제12조~제27조)	'지역정주지원센터' 조문 삽입에 따른 순연	제27조	사업성과관리위원회	'자체점검위원회' 로 명칭 변경	위원회 명칭 현실화 및 기능 명확화	제28조~제29조	조문 번호 (제28조~제29조)	조문 번호 변경 (제29조~제30조)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조문 순연
	구분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5조(구성)	진천RISE사업운영본부 내 센터 구성	'지역정주지원센터' 신설	지역 맞춤형 취·창업 지원 조직 강화																							
	제11조(신설)	(기존 AIS포츠센터)	지역정주지원센터 업무 신설	신설 조직의 소관 업무 분장																							
	제11조~제26조	조문 번호 (제11조~제26조)	조문 번호 변경 (제12조~제27조)	'지역정주지원센터' 조문 삽입에 따른 순연																							
	제27조	사업성과관리위원회	'자체점검위원회' 로 명칭 변경	위원회 명칭 현실화 및 기능 명확화																							
제28조~제29조	조문 번호 (제28조~제29조)	조문 번호 변경 (제29조~제30조)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조문 순연																								
기대효과	• 지역정주지원센터 신설을 통한 취·창업-정주 연계 지원 체계 구축으로 참여 인재의 지역 정착률 제고 • 자체평가 관리 및 점검 체계 강화로 사업 성과 관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 RISE 사업의 지속적 개선 및 환류 체계 확립을 통한 사업 운영의 내실화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 「우석대학교 진천RISE사업단 운영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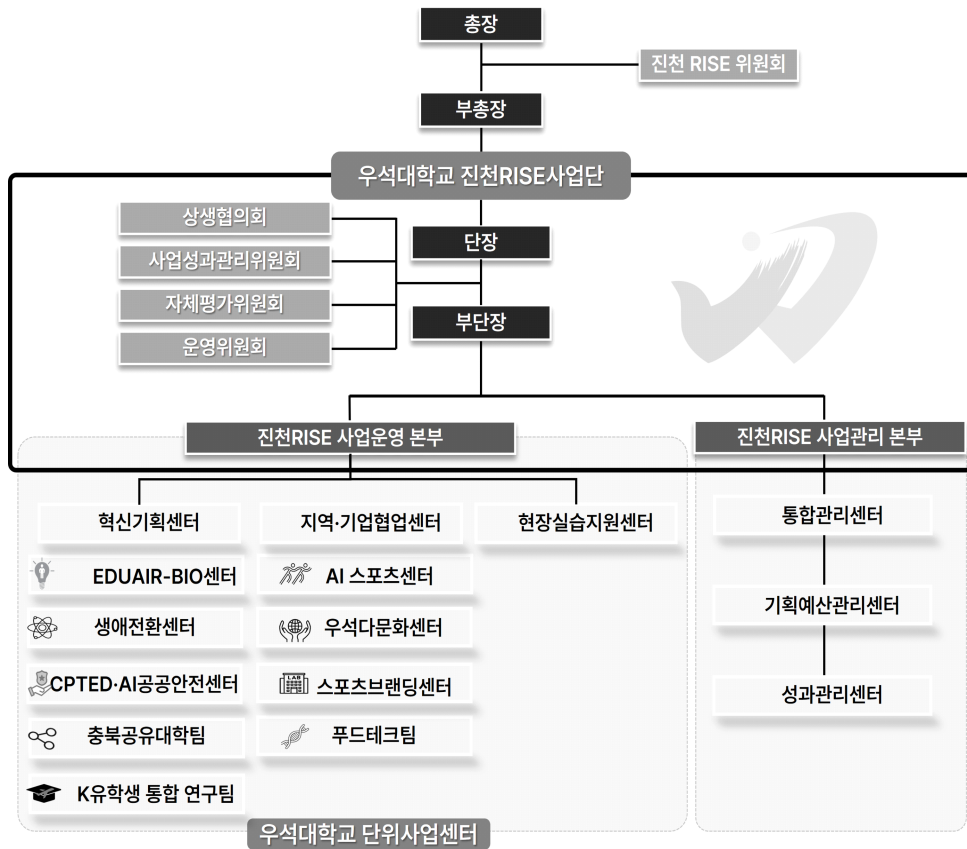
「우석대학교 진천RISE사업단 운영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 2 장 조 직	제 2 장 조 직
제4조(단장 등) ①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진천RISE사업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두며, 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②단장을 보좌하여 사업단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본부장 및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④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7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제5조(구성) ①사업단에는 진천RISE사업운영본부, 진천RISE사업관리본부를 둔다. ②진천RISE사업운영본부에는 혁신기획센터, 지역·기업협업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센터 신설> AI스포츠센터, 생애전환센터, 우석다문화센터, 스포츠브랜딩센터, EDUAIR-BIO센터, CPTED·AI공공안전센터, 충북공유대학팀, 푸드테크팀, K유학생통합연구팀을 둔다. ③진천RISE사업관리본부에는 통합관리센터, 기획예산관리센터, 성과관리센터를 둔다. 제6조(산업체전문교수) 대학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위해 산업체 전문교수를 둘 수 있으며, 산업체 전문교수는 산업체에 2년 이상 재직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4조(단장 등) ①~④ (현행과 같음)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진천RISE사업운영본부에는 혁신기획센터, 지역·기업협업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u>지역정주지원센터</u>, AI스포츠센터, 생애전환센터, 우석다문화센터, 스포츠브랜딩센터, EDUAIR-BIO센터, CPTED·AI공공안전센터, 충북공유대학팀, 푸드테크팀, K유학생통합연구팀을 둔다. ③(현행과 같음) 제6조(산업체전문교수) (현행과 같음)
제 3 장 업 무	제 3 장 업 무
제 1 절 진천RISE사업운영본부	제 1 절 진천RISE사업운영본부
제7조(진천RISE사업운영본부장) 진천RISE사업운영본부장은 진천RISE사업운영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혁신기획센터) 혁신기획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천RISE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기획 수립	제7조(진천RISE사업운영본부장) (현행과 같음) 제8조(혁신기획센터)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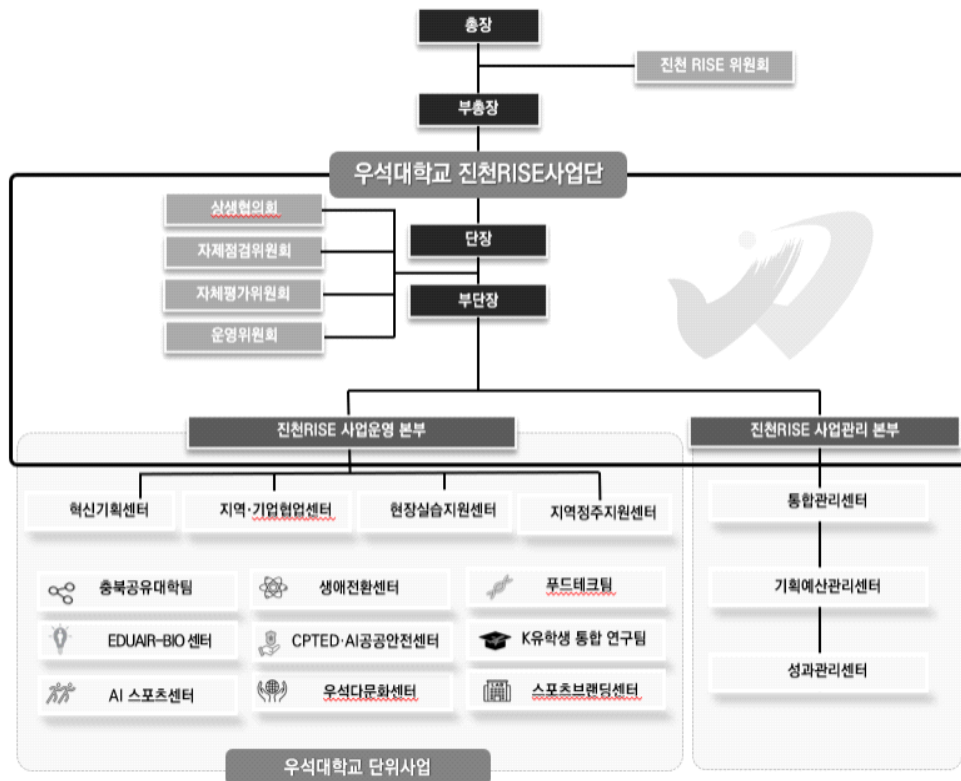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2. 교육혁신 및 지역산업 연계형 사업모델 개발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9조(지역·기업협업센터) 지역·기업협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 협력 기반 지역기업 맞춤형 공동사업 추진 2. 지역산업과 연계한 혁신클러스터 및 기업협업체계 구축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10조(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산업체 및 기관과 연계한 표준현장실습 운영 2. 고교·대학 연계형 현장기반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u><조 신설></u> <u>제11조(AI스포츠센터)</u> <u>제12조(생애전환센터)</u> <u>제13조(우석다문화센터)</u> <u>제14조(스포츠브랜딩센터)</u> <u>제15조(EDUAIR-BIO센터)</u> <u>제16조(CPTED·AI센터)</u> <u>제17조(충북공유대학팀)</u> <u>제18조(푸드테크팀)</u> <u>제19조(K유학생통합연구팀)</u>	제9조(지역·기업협업센터) (현행과 같음) 제10조(현장실습지원센터) (현행과 같음) <u>제11조(지역정주지원센터)</u> 지역정주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u>1. 진로·취업·창업 관련 지산학 연계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업무</u> <u>2. 진로·취업·창업 지도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u> <u>3. 취·창업동아리 지원에 관한 업무</u> <u>4.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u> <u>제12조(AI스포츠센터)</u> <u>제13조(생애전환센터)</u> <u>제14조(우석다문화센터)</u> <u>제15조(스포츠브랜딩센터)</u> <u>제16조(EDUAIR-BIO센터)</u> <u>제17조(CPTED·AI센터)</u> <u>제18조(충북공유대학팀)</u> <u>제19조(푸드테크팀)</u> <u>제20조(K유학생통합연구팀)</u>
제 2 절 인천RISE사업관리본부 <u>제20조(인천RISE사업관리본부장)</u> <u>제21조(통합관리센터)</u> <u>제22조(기획예산관리센터)</u> <u>제23조(성과관리센터)</u>	제 2 절 인천RISE사업관리본부 <u>제21조(인천RISE사업관리본부장)</u> <u>제22조(통합관리센터)</u> <u>제23조(기획예산관리센터)</u> <u>제24조(성과관리센터)</u>
제 4 장 위원회	제 4 장 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24조(RISE 위원회) 제25조(RISE 운영위원회) 제26조(상생협의회) 제27조(사업성과관리위원회) ①진천RISE사업 사업성과관리 및 성과 점검, 환류 성과 창출을 위하여 사업성과관리위원회를 두며 기능은 각 호와 같다. - RISE사업 실행과제 성과분석 - RISE사업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사업추진 성과관리 - RISE사업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자문 -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②사업성과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10인 내외의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사업성과관리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성과관리센터 직원으로 한다. 제28조(자체평가위원회) 제 5 장 기 타 제29조(포상)	제25조(RISE 위원회) 제26조(RISE 운영위원회) 제27조(상생협의회) 제28조(자체점검위원회) ①진천RISE사업 사업성과관리 및 성과 점검, 환류 성과 창출을 위하여 자체점검위원회를 두며 기능은 각 호와 같다. 1~4 (현행과 같음) ②자체점검위원회는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10인 내외의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자체점검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성과관리센터 직원으로 한다. 제29조(자체평가위원회) 제 5 장 기 타 제30조(포상)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기구표 현행>



<기구표 개정(안)>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장학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학생복지팀	관련부서	글로벌교육지원센터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호북공업대 2+2 협정 프로그램 참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제4조 2항에 따라 학습지원비(생활비성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함. • 외국인 유학생들의 일시적 성적 부진으로 인한 지원 중단을 방지하고 학업 지속성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생활비성 장학금에 한하여 장학금 수혜자격 중 직전학기 취득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국제교류위원회 심의(2025.8.14.) • 장학위원회 심의(2026.1.13.)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8조(장학금수혜자격) 제②항 ‘외국인자비유학생장학금B’ 신설 - 이수학점 제한 완화: 외국인 자비 유학생의 학업 여건을 고려하여 장학금 수혜 자격 중 이수학점(9학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기대효과	• 협약서 조항에 따라 학습지원비 지급하여 외국인자비유학생의 학업 지속성과 생활 안정 지원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 「장학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장학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8조(장학금수혜자격)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 2. 직전학기 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다만, 우석희망장학금A,B,C,D, 우석드림장학금, 취업역량계발장학금, 우석챌프장학금, 미래융합대학 소속학생의 입학드림장학금과 성적장학금, <u><신설></u>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 3. (개정 2008.5.26., 개정 2010.4.26.) (삭제 2013.8.13.) ②(개정 2008.5.26.) (삭제 2013.8.13.) 1. (삭제 2013.8.13.) 2. (삭제 2013.8.13.) 3. (삭제 2013.8.13.) 4. (삭제 2013.8.13.)	제8조(장학금수혜자격)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 2. 직전학기 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다만, 우석희망장학금A,B,C,D, 우석드림장학금, 취업역량계발장학금, 우석챌프장학금, 미래융합대학 소속학생의 입학드림장학금과 성적장학금, <u>외국인자비유학생장학금B</u>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 3. (개정 2008.5.26., 개정 2010.4.26.) (삭제 2013.8.13.) ②(개정 2008.5.26.) (삭제 2013.8.13.) 1. (삭제 2013.8.13.) 2. (삭제 2013.8.13.) 3. (삭제 2013.8.13.) 4. (삭제 2013.8.13.)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생활관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생활관 행정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생활관 내 청결 유지 및 시설 관리를 위해 ‘생활관 예치금’ 항목신설 - 일부 유학생의 무단 퇴사 및 객실 방치 사례 방지 - 객실 청소 상태 미비 및 비품 파손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발생 최소화 • 예치금 운영 - 금액: 100,000원 (학기별 생활관비와 별도 납부) - 환불 절차: 퇴사 신청: 퇴사 신청서 제출 - 호실 점검: 담당자 방문 후 객실 청소 상태 및 비품 파손 여부 확인 - 환불 처리: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전액 반환 (시설 파손이나 청소 불량 시 해당 비용 차감 후 환불)		
관련근거 (관계법령)	• 생활관 운영위원회 심의(2026.1.16.)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2조(용어 정의) 제3호 - 보증금 항목 확대: 기존 ‘키보증금’ 을 ‘보증금(키, 예치금)’ 으로 범위를 넓혀, 퇴사 시 청소 및 시설 점검용 예치금 운영 근거 마련		
기대효과	• 무단퇴사 시 경제적 손실을 인지하고 퇴사 절차 준수를 향상 • 퇴사 시 시설 훼손 감소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정 청소 상태 향상 • 퇴사 절차 준수 교육을 통해 공동체 의식 강화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해당 있음	
첨부자료	• 「생활관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생활관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관”이란 전주캠퍼스 우석헌1관, 우석헌2관, 우석헌3관, 우석헌4관, 진천캠퍼스 우석헌을 말한다. 2. “관생”이란 생활관에 입사한 학생을 말한다. 3. “생활관비”란 관리비, 관생회비, <u>키보중금</u>, 식비를 포함하여 말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관”이란 전주캠퍼스 우석헌1관, 우석헌2관, 우석헌3관, 우석헌4관, 진천캠퍼스 우석헌을 말한다. 2. “관생”이란 생활관에 입사한 학생을 말한다. 3. “생활관비”란 관리비, 관생회비, <u>보중금(키, 예치금)</u>, 식비를 포함하여 말한다.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업무분장규정」		
입안형태	☐ 제 정		

「업무분장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 9 장 대학원 등	제 9 장 대학원 등
제23조(교학팀) 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원장 직인관리에 관한 업무 2.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업무 3. 내국인 대학원생 입학에 관한 업무 (개정 2026.1.1.) 4. 학위등록 및 수여에 관한 업무 5. 학사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 6.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7. 논문관리에 관한 업무 8. 수업관리에 관한 업무 9. 수강신청 및 등록에 관한 업무 10. 시험 및 성적관리에 관한 업무 11. <삭제 2026.1.1.> 12. 장학금에 관한 업무 13. 학적부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4. 학적 변동에 관한 업무 15. 학력 조회 및 회보에 관한 업무 16. 대학원 모집단위 및 정원 조정에 관한 업무 (개정 2019.9.4.) 17.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위촉에 관한 업무 18. 특별강좌에 관한 업무 19. 강의료에 관한 업무 20. 교육실습 및 교원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 21. 대학원 요람 발간에 관한 업무 22.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에 관한 업무 23. <삭제 2007.5.21.> 24. 원우회에 관한 업무 25.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 <u><조신설></u>	제23조(교학팀) 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25. (현행과 같음) <u>제23조2(진천교학팀) 진천교학팀은 진천캠퍼스 대학원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u> <u>1. 진천캠퍼스 대학원 입학 업무</u> <u>2.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u> <u>3. 논문관리에 관한 업무</u> <u>4. 수업관리에 관한 업무</u> <u>5. 수강신청 및 등록에 관한 업무</u> <u>6. 시험 및 성적관리에 관한 업무</u> <u>7. 학적부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u> <u>8. 학적 변동에 관한 업무</u> <u>9. 학력 조회 및 회보에 관한 업무</u> <u>10. 특별강좌에 관한 업무</u> <u>11.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u>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위임전결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교학팀	관련부서	학사지원센터
부서간 협의 결과	협의 완료		
대학평의회	해당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대학원생 증가에 따른 관리 효율화를 위해 진천교학팀 신설에 따라, 업무 범위와 권한을 조정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대학원위원회 심의(2026.01.15.)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진천교학팀의 업무 소관 명확화 및 전결사항 신설		
기대효과	진천캠퍼스내 대학원 교학팀 설치로 유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 및 학생 만족도 기대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대학원 진천교학팀</u> <table><tr><th rowspan="2">단 위 업 무</th><th rowspan="2">세 부 업 무</th><th rowspan="2">총장</th><th colspan="2">전결권자</th></tr><tr><th>원장</th><th>팀장</th></tr><tr><td rowspan="3">1. 학위등록 및 수료</td><td>졸업 및 수료학점 조사</td><td></td><td></td><td>○</td></tr><tr><td>졸업사정 자료 제출</td><td></td><td></td><td>○</td></tr><tr><td>졸업사정</td><td></td><td>○</td><td></td></tr><tr><td rowspan="5">2. 수업</td><td>출강부 관리</td><td></td><td></td><td>○</td></tr><tr><td>수업진행 및 출결부 관리</td><td></td><td></td><td>○</td></tr><tr><td>수강신청 및 정정</td><td></td><td></td><td>○</td></tr><tr><td>선수(보충)과목 선정</td><td></td><td>○</td><td></td></tr><tr><td>휴강, 결강, 보강처리</td><td></td><td></td><td>○</td></tr><tr><td rowspan="6">3. 학위논문</td><td>계획서 및 진행보고서 확인</td><td></td><td>○</td><td></td></tr><tr><td>지도교수 확인</td><td></td><td>○</td><td></td></tr><tr><td>논문심사위원 구성</td><td></td><td>○</td><td></td></tr><tr><td>논문제목의 변경승인</td><td></td><td>○</td><td></td></tr><tr><td>논문발표에 관한 사항</td><td></td><td></td><td>○</td></tr><tr><td>논문심사에 관한 사항</td><td></td><td>○</td><td></td></tr><tr><td rowspan="3">4. 세미나 및 학술강연</td><td>기본 계획 수립</td><td></td><td>○</td><td></td></tr><tr><td>외부강사 추천 및 초빙</td><td></td><td>○</td><td></td></tr><tr><td>세미나 및 학술강연 시행</td><td></td><td>○</td><td></td></tr><tr><td>5. 학력조회</td><td>대외 및 학내 학력조회에 관한 사항</td><td></td><td></td><td>○</td></tr><tr><td rowspan="2">6. 학적변동</td><td>휴학 및 복학, 자퇴</td><td></td><td>○</td><td></td></tr><tr><td>전공 변경에 관한 사항</td><td></td><td>○</td><td></td></tr><tr><td rowspan="4">7. 학적부 관리</td><td>학적부 작성</td><td></td><td>○</td><td></td></tr><tr><td>학적부 보존</td><td></td><td>○</td><td></td></tr><tr><td>학적부 정정</td><td></td><td>○</td><td></td></tr><tr><td>성적에 관한 사항</td><td></td><td>○</td><td></td></tr><tr><td rowspan="3">8. 병사관계</td><td>학적변동자 통보에 관한 업무</td><td></td><td></td><td>○</td></tr><tr><td>학적보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td><td></td><td>○</td><td></td></tr><tr><td>학력조회 회보 및 병사에 관한 사항</td><td></td><td>○</td><td></td></tr></table>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원장	팀장	1. 학위등록 및 수료	졸업 및 수료학점 조사			○	졸업사정 자료 제출			○	졸업사정		○		2. 수업	출강부 관리			○	수업진행 및 출결부 관리			○	수강신청 및 정정			○	선수(보충)과목 선정		○		휴강, 결강, 보강처리			○	3. 학위논문	계획서 및 진행보고서 확인		○		지도교수 확인		○		논문심사위원 구성		○		논문제목의 변경승인		○		논문발표에 관한 사항			○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		○		4. 세미나 및 학술강연	기본 계획 수립		○		외부강사 추천 및 초빙		○		세미나 및 학술강연 시행		○		5. 학력조회	대외 및 학내 학력조회에 관한 사항			○	6. 학적변동	휴학 및 복학, 자퇴		○		전공 변경에 관한 사항		○		7. 학적부 관리	학적부 작성		○		학적부 보존		○		학적부 정정		○		성적에 관한 사항		○		8. 병사관계	학적변동자 통보에 관한 업무			○	학적보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학력조회 회보 및 병사에 관한 사항		○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원장	팀장																																																																																																																									
1. 학위등록 및 수료	졸업 및 수료학점 조사			○																																																																																																																								
	졸업사정 자료 제출			○																																																																																																																								
	졸업사정		○																																																																																																																									
2. 수업	출강부 관리			○																																																																																																																								
	수업진행 및 출결부 관리			○																																																																																																																								
	수강신청 및 정정			○																																																																																																																								
	선수(보충)과목 선정		○																																																																																																																									
	휴강, 결강, 보강처리			○																																																																																																																								
3. 학위논문	계획서 및 진행보고서 확인		○																																																																																																																									
	지도교수 확인		○																																																																																																																									
	논문심사위원 구성		○																																																																																																																									
	논문제목의 변경승인		○																																																																																																																									
	논문발표에 관한 사항			○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		○																																																																																																																									
4. 세미나 및 학술강연	기본 계획 수립		○																																																																																																																									
	외부강사 추천 및 초빙		○																																																																																																																									
	세미나 및 학술강연 시행		○																																																																																																																									
5. 학력조회	대외 및 학내 학력조회에 관한 사항			○																																																																																																																								
6. 학적변동	휴학 및 복학, 자퇴		○																																																																																																																									
	전공 변경에 관한 사항		○																																																																																																																									
7. 학적부 관리	학적부 작성		○																																																																																																																									
	학적부 보존		○																																																																																																																									
	학적부 정정		○																																																																																																																									
	성적에 관한 사항		○																																																																																																																									
8. 병사관계	학적변동자 통보에 관한 업무			○																																																																																																																								
	학적보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학력조회 회보 및 병사에 관한 사항		○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스포츠단운영규정」		
입안형태	☐ 제 정		

「스포츠단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기자로의 전환)	①육성종목으로 입학한 준특기자 학생선수의 특기자 전환평가는 매학년도에 한다. ②특기자 전환은 학과성적 70점 이상이고, <u>경기실적을 보유한 학생을</u> 대상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경기실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경기실적 적용 시기는 대회 출전 후 다음 학년도에 한다. <②항과 통합> -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해당대회에 출전한 경우 - 학교 또는 지역(도)대표로 국제대회(5개국 이상 참가)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경우 <u>정부 및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나 본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한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경우</u> - 구기 종목은 단체 <u>8강</u> 또는 리그 출전 시간 범위 <u>50%</u>이상 출전한 경우 <u><항신설></u> ④특기자 전환은 <u>스포츠단운영위원회</u>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삭제 2025.3.14.> ⑥특기자 전환심사는 <u>각 운동부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한다.</u>	제23조(특기자로의 전환)	①육성종목으로 입학한 준특기자 학생선수의 특기자 전환평가는 매학년도에 한다. ②특기자 전환은 학과성적 70점 이상이고 <u>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자를</u> 대상으로 한다. -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해당대회에 출전한 경우 - 학교 또는 지역(도)대표로 국제대회(5개국 이상 참가)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경우 <u>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주최 또는 주관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경우</u> - 구기 종목은 단체 <u>16강</u> 또는 리그 출전 시간 범위 <u>40%</u>이상 출전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경기실적의 <u>적용 시기는 대회 출전 후 다음 학년도로 한다.</u> ④제2항의 경기실적 평가기준은 <u>각 운동부에서 정하여 스포츠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⑤특기자 전환 대상자는 <u>스포츠단운영위원회</u>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9조(장학금지급 및 제한 등)	① 학생선수는 매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생선수에게 매년 평가를 통해 등록금 및 생활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상으로 인해 훈련, 연습경기, 대회참가를 할 수 없는 경우 1년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학금 지급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훈련 태만 및 지도 불응의 경우 - 학교 및 생활관 생활이 불성실한 경우 - 지도자의 승인 없이 훈련에 불참한 경우 - 지도자의 승인 없이 소속팀을 이탈한 경우 - 훈련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경우 - 해당 경기 실적이 없는 경우 - 학업 성적이 70점/100점 미만인 경우 - 학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한 경우 -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	제29조(장학금지급 및 제한 등)	① 학생선수는 매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생선수에게 매년 평가를 통해 등록금 및 생활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상으로 인해 훈련, 연습경기, 대회참가를 할 수 없는 경우 1년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학금 지급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훈련 태만 및 지도 불응의 경우 - 학교 및 생활관 생활이 불성실한 경우 - 지도자의 승인 없이 훈련에 불참한 경우 - 지도자의 승인 없이 소속팀을 이탈한 경우 - 훈련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경우 - 해당 경기 실적이 없는 경우 - 학업 성적이 70점/100점 미만인 경우 - 학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한 경우 -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

현행	개정 (안)
우 10. 기타 학생선수로서의 본분을 위배한 경우 ⑤ 다만, 동조 제4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22조 제3항에 해당하는 특기자는 해당 경기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u><항신설></u>	우 10. 기타 학생선수로서의 본분을 위배한 경우 ⑤ 다만, 동조 제4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22조 제3항에 해당하는 특기자는 해당 경기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u>⑥ 특기자 장학금 및 생활관비의 지급기준과 비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u>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육성종목 체육특기자 전환에 관한 기준표

- 스포츠단 운영규정 제23조(특기자로의 전환)제①항 육성종목으로 입학한 준특기자 학생선수의 특기자 전환평가는 매학년도에 한다.
- 스포츠단 운영규정 제23조(특기자로의 전환)제②항 특기자 전환은 학과성적 70점 이상이고,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기실적을 보유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스포츠단 운영규정 제23조(특기자로의 전환)제③항 제2항에 따른 경기실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 호 중 한 개 이상을 충족한다. 단, 경기실적 적용 시기는 대회 출전 후 다음 학년도에 한다.

제23조 (특기자 로의 전환)	스포츠단 운영규정 제23조3항	축구부				여자배구부				사격부				태권도						
		대회성적		출전시간																
		구분	배점	시간	배점	국가대표	100	국가대표	100	국가대표	100	국가대표	100	국가대표	100					
	1.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해당대회에 출전한 경우	국가대 표	100	-	-	국가대표	100	국가대표	100	국가대표	100	국가대표	100							
		상비군	100	-	-	상비군	100	상비군	100	상비군	100	상비군	100							
	2. 학교 또는 지역 (도)대표로 국제대회 (5개국 이상 참가)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경우	1위	98	-	-	1위	98	1위	98	1위	98									
		2위	96	-	-	2위	96													
		3위	94	-	-	3위	94	2위	96	2위	96									
		4강	92	-	-	4강	92													
		8강	90	-	-	8강	90	3위	94	3위	94									
		16강	88	-	-	16강	88													
	3.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주최 또는 주관 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경우	1위	70	90% 이상	30	대회명	1위	2위	3위	대회명	1위	2위	3위							
		2위	70	80% 이상	25		전국체육 대회	80	70		60	전국체육 대회	50	30	25	A급전국대회(개인전)	50	30	25	
		3위	60	70% 이상	20															
		4강	60	60% 이상	15	전국 대학배 구대회	70	60	50	전국대회 (개인전)	15	8	5	B급전국대회(개인전)	15	8	5			
	8강	50	50% 이상	-	전국대회(단체전)													12	8	5
	16강	30	40% 이상	-																
	4. 구기 종목은 단체 16강 또는 리그 출 전 시간범위 40% 이상 출전한 경우	대회명	1위	2위	3위	KUSF 대학배구 U-리그	70	60	50	전국대회 (단체전)	12	8	5	C급기타대회(도 대회 등)	5	3	2			
		KUSF 대학	50	40	30															
		U-리그																		

- ※ 팀 운동의 경우 최종 높은 팀 성적으로 배점을 반영하여 육성종목 체육특기자 전환 평가한다.
- ※ 입상 성적 기입의 경우 상위 성적의 대회 순으로 최대 3개까지 반영하며, 동점자 발생 시 학교 성적 및 기타 대회 수상 여부 등을 반영한다.
- ※ 개인전과 단체전 입상 실적 포인트가 동점인 경우 개인전 입상자를 우선으로 정한다.

- 1 -

스포츠지원센터(전주) 육성종목 체육특기자 전환에 관한 기준표

- ※ 육성종목 체육특기자 운동부별 장학금 비율의 경우 각 운동부별 장학금 예산 배정 범위를 넘을 수 없다.

□ 태권도(겨루기) 대회 등급

태권도(겨루기)대회 등급	
A급 대회명(전국)	B급 대회명(전국)
국가대표선발 예선 및 최종선발대회	전국종별선수권대회
전국우수선수선발대회	전국대학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2조 경기 및 단체전
전국체육대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대학태권도대회 2조 경기 및 단체전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 단체전
협화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단체전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C급 대회명(도 단위)
태권도원배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도 단위 대회 (타 지역 대회 포함)
전국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대학태권도대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춘천코라이온국제태권도대회	
김윤용컵 국제태권도대회	

□ 대회별 합산 점수 장학금 지급 비율

구간	대회별 합산 점수	장학금 지급 비율	비고
1	3점 이상 ~ 10점 이하	25%	
2	11점 이상 ~ 20점 이하	40%	
3	21점 이상 ~ 60점 이하	50%	
4	61점 이상 ~ 70점 이하	60%	
5	71점 이상 ~ 90점 이하	70%	
6	91점 이상	100%	

※ 육성종목 체육특기자 운동부별 장학금 비율의 경우 각 운동부별 장학금 예산 배정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스포츠단운영규정 제29조(장학금지급 및 제한 등) ① 학생선수는 매 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생선수에게 매년 평가를 통해 등록금 및 생활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8.25.)

③ 공상으로 인해 훈련, 연습경기, 대회참가를 할 수 없는 경우 1년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8.25.)

④ 장학금 지급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훈련 태만 및 지도 불응의 경우
2. 학교 및 생활관 생활이 불성실한 경우
3. 지도자의 승인 없이 훈련에 불참한 경우
4. 지도자의 승인 없이 소속팀을 이탈한 경우
5. 훈련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해당 경기 실적이 없는 경우
7. 학업 성적이 70점/100점 미만인 경우
8. 학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한 경우
9.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10. 기타 학생선수로서의 본분을 위배한 경우

⑤ 다만, 동조 제4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22조 제3항에 해당하는 특기자는 해당 경기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스포츠단운영규정 제30조(자격상실) 특기자로서 재학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선수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선수로서의 활동에 결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학년도 말까지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실적이 없는 자
4. 준특기자에 비해 경기실적이 미흡한 자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학사관리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법인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재수강 예외 허용 근거 마련		
관련근거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8조(재수강신청)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제1항	성적이 80점 미만인 경우 동일 또는 대체교과목 재수강 가능	(현행과 같음)
	제2항	(신설)	총장 승인 시 예외적 재수강 허용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
	제3항	(기존 제2항) 인터넷 신청 원칙 및 전공대체과목 제출 절차	(기존 제2항과 동일, 항 번호만 변경)
기대효과	•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시 교과목의 재수강 기회 부여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8조(재수강신청) ①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80점 미만인 경우에 한해, 동일과목(과목명과 과목번호가 동일한 과목)이거나 대체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으로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u><항 신설></u> ②재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대체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에는 학과(부)에서 정한 대체과목 지정표를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수강신청) ①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80점 미만인 경우에 한해, 동일과목(과목명과 과목번호가 동일한 과목)이거나 대체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으로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u>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재수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재수강할 수 있다.</u> ③재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대체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에는 학과(부)에서 정한 대체과목 지정표를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시험 및 성적에 관한 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학사관리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법인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성적 80점 미만의 재수강 요건 이외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첨가되어 변경됨에 따라, 최종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을 반영하고 기존 교과목의 성적은 무효로 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11조(재수강성적의 처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th style="width: 60%;">개 정 (안)</th><th style="width: 25%;">비 고</th></tr> </thead> <tbody> <tr> <td>제1항</td><td>재수강 성적을 인정하고 기존 성적은 무효화</td><td>핵심 변경</td></tr> <tr> <td>제2항</td><td><삭제></td><td>제1항으로 통합</td></tr> <tr> <td>제3항</td><td>기존 성적 무효 처리에 따라 재산출</td><td>문구 정비</td></tr> <tr> <td>제4항~제5항</td><td>(현행과 같음)</td><td>유지</td></tr> </tbody> </table> - 제11조(재수강성적의 처리)			구 분	개 정 (안)	비 고	제1항	재수강 성적을 인정하고 기존 성적은 무효화	핵심 변경	제2항	<삭제>	제1항으로 통합	제3항	기존 성적 무효 처리에 따라 재산출	문구 정비	제4항~제5항	(현행과 같음)	유지
구 분	개 정 (안)	비 고																
제1항	재수강 성적을 인정하고 기존 성적은 무효화	핵심 변경																
제2항	<삭제>	제1항으로 통합																
제3항	기존 성적 무효 처리에 따라 재산출	문구 정비																
제4항~제5항	(현행과 같음)	유지																
기대효과	- 재수강 성적만 반영되므로 학생이 재수강한 교과목에 집중 - 이미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보다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한 학업 성취도 제고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해당사항 없음																
첨부자료	「시험 및 성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시험 및 성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1조(재수강성적의 처리) ① <u>이미 이수한 성적과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 중 상위 성적을 인정하고 하위 성적은 무효로 한다. 다만, 성적이 동일할 경우 재수강 성적으로 인정한다.</u> ② <u>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90점미만으로 한다.</u> ③ <u>제1항의 경우에 재수강성적이 상위인 경우에는 당초의 해당 학기 성적 평균 평점을 다시 산출한다.</u> ④ 재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당초의 해당 학기의 성적 경고는 계속 유효하다. ⑤ 제1항의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에는 재수강한 교과목임(R)을 표기한다.	제11조(재수강성적의 처리) ① <u>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90점 미만으로 하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무효로 처리한다.</u> ② <삭제> ③ <u>제1항에 따라 기존 성적을 무효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해당 학기의 성적 평균 평점을 재산출한다.</u> ④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u>부 칙</u> <u>이 규정은 2026년 월일부터 시행한다.</u>

규정 입안서

규정명	「AI혁신추진위원회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기획처/기획팀	관련 부서	AI혁신추진위원회																
부서 간 협의 결과	AI관련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AI혁신추진위원회에 부위원장제도를 신설하기로 함																		
법인이사회	해당 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해당 사항 없음																		
입안 사유 (추진 배경)	- 정부의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에 따른 교육부 등이 추진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AI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임 - 이와 관련하여, 부위원장제도를 신설하여 사업 추진을 담당하게 하고자 함																		
관련 근거 (관계 법령)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구성) 제4항 ④위원장의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호선으로 선출한다.(신설 2017.3.31)																		
주요 내용 (제·개정 내용)	제3조(구성) ‘부위원장’ 신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40%;">현 행</th> <th style="width: 30%;">개 정 (안)</th> <th style="width: 20%;">개정 사유</th> </tr> </thead> <tbody> <tr> <td>제1항~제2항</td> <td>위원회 구성원 및 위원장 위촉</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제3항</td> <td>(항 신설)</td> <td>부위원장 신설 (위원장 직무 대행 근거 마련)</td> <td>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확보</td> </tr> <tr> <td>제4항</td> <td>(기존 제3항) 위촉직 위원 및 외부전문가 위촉</td> <td>(기존 제3항과 동일, 항 번호만 변경)</td> <td>조항 신설에 따른 정비</td> </tr> </tbody> </table>			구분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1항~제2항	위원회 구성원 및 위원장 위촉	(현행과 같음)	-	제3항	(항 신설)	부위원장 신설 (위원장 직무 대행 근거 마련)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확보	제4항	(기존 제3항) 위촉직 위원 및 외부전문가 위촉	(기존 제3항과 동일, 항 번호만 변경)	조항 신설에 따른 정비
구분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1항~제2항	위원회 구성원 및 위원장 위촉	(현행과 같음)	-																
제3항	(항 신설)	부위원장 신설 (위원장 직무 대행 근거 마련)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확보																
제4항	(기존 제3항) 위촉직 위원 및 외부전문가 위촉	(기존 제3항과 동일, 항 번호만 변경)	조항 신설에 따른 정비																
기대효과	- 교육·행정 분업 및 성과 관리 강화를 통한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산업체 및 지역 수요 기반의 AI 실무 인재양성 체계 구축 - 첨단산업 특성화 역량 고도화를 통한 대외 신뢰도 제고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 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치 등)	가. 의견수렴 유무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해당사항 없음																
첨부자료	「AI혁신추진위원회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AI혁신추진위원회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대외협력부총장, 진천부총장, 산학협력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취업처장, 입학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본부장, 교양대학장, 교학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u><항 신설></u> ③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대외협력부총장, 진천부총장, 산학협력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취업처장, 입학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본부장, 교양대학장, 교학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u>③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u> ④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6년 월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직제규정」		
입안형태	☐ 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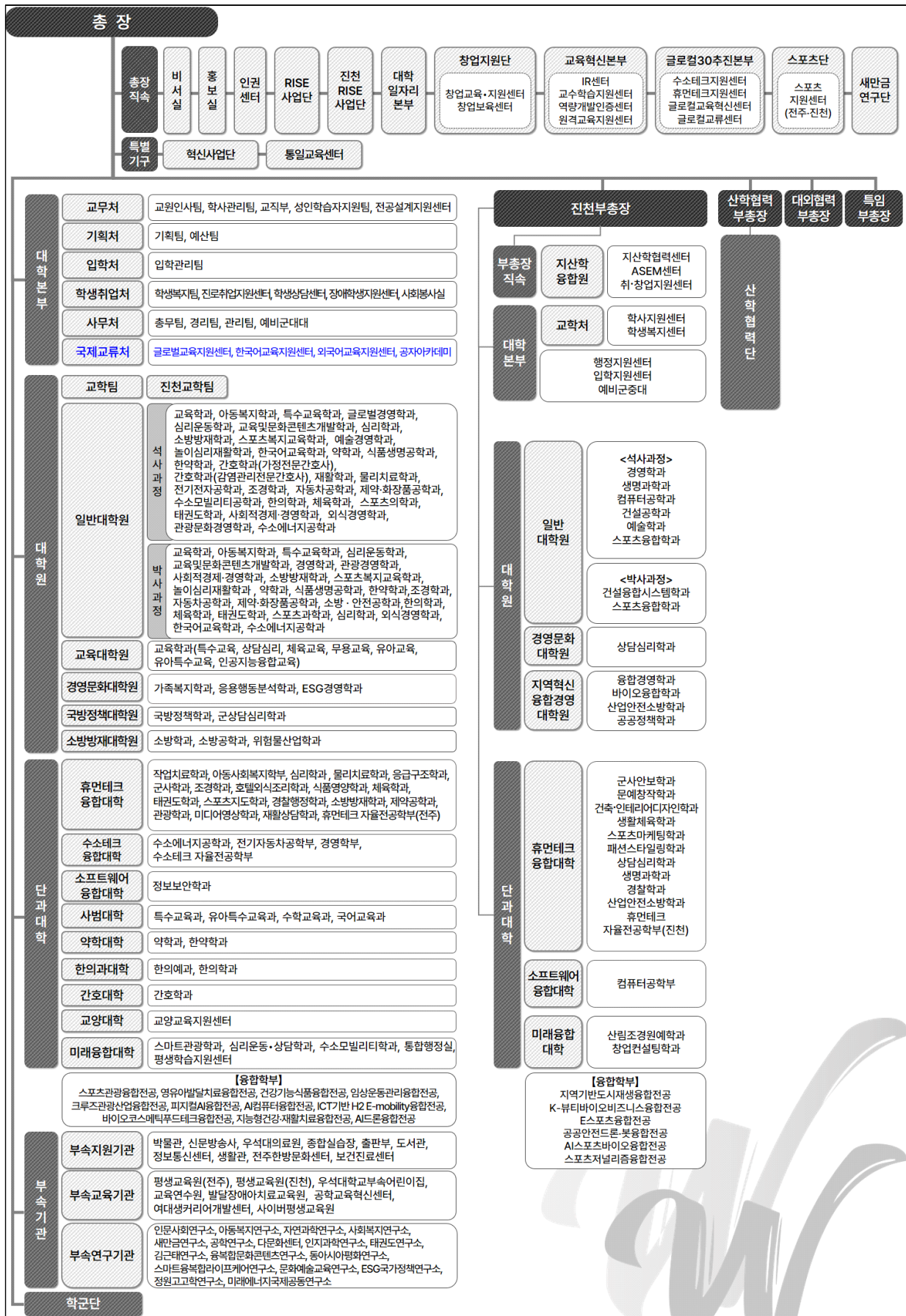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총장) ①총장은 본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총장이 결위된 때에는 진천부총장, 교무처, 기획처, 입학처, 학생취업처, 사무처, <신설> 순서에 따라 대학본부 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22.5.26.>	제3조(총장) ①(현행과 같음) ②총장이 결위된 때에는 진천부총장, 교무처, 기획처, 입학처, 학생취업처, 사무처, 국제교류처 순서에 따라 대학본부 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현행과 같음)
제5조(총장 직속기관) 총장 직속으로 비서실, 홍보실, 인권센터, RISE사업단, 진천RISE사업단, 대학일자리본부, 창업지원단, 교육혁신본부, 국제교류원, 글로벌30추진본부, 스포츠단, 새만금연구단을 두고, 진천부총장 직속으로 지산학융합원을 둔다.	제5조(총장 직속기관) 총장 직속으로 비서실, 홍보실, 인권센터, RISE사업단, 진천RISE사업단, 대학일자리본부, 창업지원단, 교육혁신본부, <삭제>, 글로벌30추진본부, 스포츠단, 새만금연구단을 두고, 진천부총장 직속으로 지산학융합원을 둔다.
제6조(대학본부) 전주캠퍼스에는 교무처, 기획처, 입학처, 학생취업처, 사무처, <신설>를 두고, 진천캠퍼스에는 교학처를 둔다.	제6조(대학본부) 전주캠퍼스에는 교무처, 기획처, 입학처, 학생취업처, 사무처, 국제교류처를 두고, 진천캠퍼스에는 교학처를 둔다.
제16조(총장 직속기관장) ①RISE사업단, 대학일자리본부, 교육혁신본부, 국제교류원, 글로벌30추진본부, 스포츠단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인권센터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진천RISE사업단, 새만금연구단, 지산학융합원, 창업지원단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비서실, 홍보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비서실, 새만금연구단, 인권센터, 글로벌30추진본부, 지산학융합원의 장은 외부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 ②총장 직속기관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삭제 2026.2.27.>	제16조(총장 직속기관장) ①RISE사업단, 대학일자리본부, 교육혁신본부, <삭제> 글로벌30추진본부, 스포츠단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인권센터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진천RISE사업단, 새만금연구단, 지산학융합원, 창업지원단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비서실, 홍보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비서실, 새만금연구단, 인권센터, 글로벌30추진본부, 지산학융합원의 장은 외부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 ②~③(현행과 같음)
<조 신설>	제25조의2(국제교류처) 국제교류처에 글로벌교육지원센터, 한국어교육지원센터, 외국어교육지원센터, 공자아카데미를 둔다.
제36조(기구표) 본교의 기구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6., 2019.3.7., 2019.7.4., 2019.7.29., 2020.1.16., 2020.2.27., 2020.9.11., 2020.11.4., 2020.11.26., 2021.1.27., 2022.2.8., 2022.3.22.,	제36조(기구표) 본교의 기구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6., 2019.3.7., 2019.7.4., 2019.7.29., 2020.1.16., 2020.2.27., 2020.9.11., 2020.11.4., 2020.11.26., 2021.1.27., 2022.2.8., 2022.3.22.,

현 행	개 정 (안)
2022.5.26., 2022.6.30. 2022.8.31., 2022.11.16., 2022.12.28., 2023.2.28., 2023.6.8., 2023.7.27., 2023.10.26., 2023.12.29., 2024.2.15., 2024.6.27., 2024.8.28., 2024.9.30., 2024.11.5., 2024.12.26., 2025.2.13., 2025.2.27., 2025.4.29., 2025.5.28., 2025.6.26., 2026.1.1.)	2022.5.26., 2022.6.30. 2022.8.31., 2022.11.16., 2022.12.28., 2023.2.28., 2023.6.8., 2023.7.27., 2023.10.26., 2023.12.29., 2024.2.15., 2024.6.27., 2024.8.28., 2024.9.30., 2024.11.5., 2024.12.26., 2025.2.13., 2025.2.27., 2025.4.29., 2025.5.28., 2025.6.26., 2026.1.1., <u>2026.00.00.</u>)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연관] 「우석학원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1조(하부조직) ①총장직속으로 비서실 홍보실, 인권센터와 RISE사업단, 진천RISE사업단, 대학일자리본부, 창업지원단, 교육혁신본부, <u>국제교류원</u>, 스포츠단, 새만금연구단을 두고, 진천부총장 직속으로 지산학융합원을 둔다. ②전주캠퍼스에는 교무처, 기획처, 입학처, 학생취업처, 사무처, <u><신설></u>를 두고 진천캠퍼스에는 교학처를 둔다. ③각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기획처장, 사무처장은 3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RISE사업단, 대학일자리본부, 교육혁신본부, <u>국제교류원</u>, 글로벌30추진본부, 스포츠단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인권센터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진천RISE사업단, 새만금연구단, 지산학융합원, 창업지원단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비서실, 홍보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7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비서실, 새만금연구단, 인권센터, 글로벌30추진본부, 지산학융합원의 장은 외부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 ⑤각 처와 단, 본부, 원 및 진천캠퍼스에는 하부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7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⑥제1항 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분장업무 등은 따로 정한다. ⑦대학교에 교육, 연구진흥과 학교발전에 필요한 특수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특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91조(하부조직) ①총장직속으로 비서실 홍보실, 인권센터와 RISE사업단, 진천RISE사업단, 대학일자리본부, 창업지원단, 교육혁신본부, <u><삭제></u>, 스포츠단, 새만금연구단을 두고, 진천부총장 직속으로 지산학융합원을 둔다. ②전주캠퍼스에는 교무처, 기획처, 입학처, 학생취업처, 사무처, <u>국제교류처</u>를 두고 진천캠퍼스에는 교학처를 둔다. ③ (현행과 같음) ④RISE사업단, 대학일자리본부, 교육혁신본부, <u><삭제></u> 글로벌30추진본부, 스포츠단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인권센터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진천RISE사업단, 새만금연구단, 지산학융합원, 창업지원단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비서실, 홍보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7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비서실, 새만금연구단, 인권센터, 글로벌30추진본부, 지산학융합원의 장은 외부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u><신설></u>	<u>부 칙(개정승인2026.00.00.)-이사회의결(2026.00.00.)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별표] 기구표 개정(안)



연관 규정 개정(안)

규정명	현 행	개 정 (안)
업무분장규정	제5조의12(글로벌교육지원센터) 글로벌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삭제) 1. 국제교류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 업무 2. 외국대학 및 외국기관·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업무 3. 외국인 교수 및 전문가 유치지원에 관한 업무 4. 외국인방문에 따른 행사의전 및 각종 국제행사 지원 업무 5. 국제교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업무 6. 국외인턴 및 연수단 파견 지원 업무 7. 외국연수단 초청 및 지원에 관한 업무 8. 교직원·학생의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업무 9. 교환 및 자비학생 선발, 파견 및 관리 업무 10. 지역사회 국제화 프로그램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업무 11. 유학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업무 12. 외국인 학생의 유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3. 외국인 학생 선발 및 전형관리에 관한 업무(단, 정원내 외국인 학부생은 제외) 14. 외국인 학생 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업무 15. 외국인 학생과의 인적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업무 16. 한국어교육지원센터 관리에 관한 업무 17. 기타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	제5조의12 <삭제 이동>

규정명	현행	개정(안)
업무분장규정	제5조의13(한국어교육지원센터) 한국어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업무 2. 외국인 학생 상담 및 대학생활 적응 지원에 관한 업무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사 모집, 연수 및 양성, 평가에 관한 업무 4.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	<u>제5조의13 <삭제 이동></u>
	제5조의14(외국어교육지원센터) 외국어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외국어교육지원센터의 외국어교육사업 기획 및 추진 업무 2.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3. 외국어 교사 모집, 연수 및 양성, 평가에 관한 업무 4.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	<u>제5조의14 <삭제 이동></u>
	제5조의15(공자아카데미) 공자아카데미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공자아카데미 사업의 기획 및 추진 업무 2. 문화강좌개설, 어학과정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3. 국내외 학술교류에 관한 업무 4.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	<u>제5조의15 <삭제 이동></u>

규정명	현행	개정(안)
업무분장규정	<장 신설>	제 8 장 국제교류처 (장신설 2026.00.00.)) 제22조의2(글로벌교육지원센터) 글로벌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제교류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 업무 2. 외국대학 및 외국기관·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업무 3. 외국인 교수 및 전문가 유치지원에 관한 업무 4. 외국인방문에 따른 행사의전 및 각종 국제행사 지원 업무 5. 국제교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업무 6. 국외인턴 및 연수단 파견 지원 업무 7. 외국연수단 초청 및 지원에 관한 업무 8. 교직원·학생의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업무 9. 교환 및 자비학생 선발, 파견 및 관리 업무 10. 지역사회 국제화 프로그램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업무 11. 유학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업무 12. 외국인 학생의 유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3. 외국인 학생 선발 및 전형관리에 관한 업무(단, 정원내 외국인 학부생은 제외) 14. 외국인 학생 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업무 15. 외국인 학생과의 인적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업무 16. 한국어교육지원센터 관리에 관한 업무 17. 기타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

규정명	현행	개정(안)
업무분장규정		제22조의3(한국어교육지원센터) 한국어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업무 2. 외국인 학생 상담 및 대학생활 적응 지원에 관한 업무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사 모집, 연수 및 양성, 평가에 관한 업무 4.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 제22조의4(외국어교육지원센터) 외국어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외국어교육지원센터의 외국어교육사업 기획 및 추진 업무 2.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3. 외국어 교사 모집, 연수 및 양성, 평가에 관한 업무 4.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 제22조의5(공자아카데미) 공자아카데미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공자아카데미 사업의 기획 및 추진 업무 2. 문화강좌개설, 어학과정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3. 국내외 학술교류에 관한 업무 4.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
	제 8 장 진천캠퍼스 제22조의2(학사지원센터) 학사지원센터는 진천캠퍼스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이하 생략 -	제 9 장 진천캠퍼스 (장 번호 변경) 제22조의6(학사지원센터) 학사지원센터는 진천캠퍼스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조번호 변경 2026.00.00.) - 이하 생략 -
	제22조의3(행정지원센터) 행정지원센터는 진천캠퍼스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이하 생략 -	제22조의7(행정지원센터) 행정지원센터는 진천캠퍼스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조번호 변경 2026.00.00.) - 이하 생략 -

규정명	현행	개정(안)
업무분장규정	제22조의4(예비군중대) 예비군중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이하 생략 -	제22조의8(예비군중대) 예비군중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조번호 변경 2026.00.00.) - 이하 생략 -
	제22조의5(입학지원센터) 입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이하 생략 -	제22조의9(입학지원센터) 입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조번호 변경 2026.00.00.) - 이하 생략 -
	제22조의6(학생복지센터) 학생복지센터는 진천캠퍼스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5.8.25.) - 이하 생략 -	제22조의10(학생복지센터) 학생복지센터는 진천캠퍼스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5.8.25.) (조번호 변경 2026.00.00.) - 이하 생략 -
	제22조의7(지산학협력센터) 지산학협력센터는 진천 캠퍼스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6.1.1.) - 이하 생략 -	제22조의11(지산학협력센터) 지산학협력센터는 진천 캠퍼스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6.1.1.) (조번호 변경 2026.00.00.) - 이하 생략 -
	제22조의8(ASEM센터) ASEM센터는 진천캠퍼스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이하 생략 -	제22조의12(ASEM센터) ASEM센터는 진천캠퍼스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조번호 변경 2026.00.00.) - 이하 생략 -
	제22조의9(취·창업지원센터) 취·창업지원센터는 진천캠퍼스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이하 생략 -	제22조의13(취·창업지원센터) 취·창업지원센터는 진천캠퍼스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조번호 변경 2026.00.00.) - 이하 생략 -
	<신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규정명	현행	개정 (안)																								
위임전결규정	글로벌교육지원센터	글로벌교육지원센터(위치조정) <개정 2026.00.00.>																								
	<table><tr><td rowspan="2">단 위 업 무</td><td rowspan="2">세 부 업 무</td><td rowspan="2">총장</td><td colspan="2">전결권자</td></tr><tr><td><u>원장</u></td><td>센터장</td></tr><tr><td></td><td>- 생략 -</td><td></td><td></td><td></td></tr></table>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u>원장</u>	센터장		- 생략 -				<table><tr><td rowspan="2">단 위 업 무</td><td rowspan="2">세 부 업 무</td><td rowspan="2">총장</td><td colspan="2">전결권자</td></tr><tr><td><u>처장</u></td><td>센터장</td></tr><tr><td></td><td>(현행과 같음)</td><td></td><td></td><td></td></tr></table>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u>처장</u>	센터장		(현행과 같음)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u>원장</u>	센터장																							
		- 생략 -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u>처장</u>	센터장																					
		(현행과 같음)																								
	한국어교육지원센터	한국어교육지원센터(위치조정) <개정 2026.00.00.>																								
	<table><tr><td rowspan="2">단 위 업 무</td><td rowspan="2">세 부 업 무</td><td rowspan="2">총장</td><td colspan="2">전결권자</td></tr><tr><td><u>원장</u></td><td>센터장</td></tr><tr><td></td><td>- 생략 -</td><td></td><td></td><td></td></tr></table>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u>원장</u>	센터장		- 생략 -				<table><tr><td rowspan="2">단 위 업 무</td><td rowspan="2">세 부 업 무</td><td rowspan="2">총장</td><td colspan="2">전결권자</td></tr><tr><td><u>처장</u></td><td>센터장</td></tr><tr><td></td><td>(현행과 같음)</td><td></td><td></td><td></td></tr></table>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u>처장</u>	센터장		(현행과 같음)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u>원장</u>	센터장																							
	- 생략 -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u>처장</u>	센터장																						
	(현행과 같음)																									
외국어교육지원센터	외국어교육지원센터(위치조정) <개정 2026.00.00.>																									
<table><tr><td rowspan="2">단 위 업 무</td><td rowspan="2">세 부 업 무</td><td rowspan="2">총장</td><td colspan="2">전결권자</td></tr><tr><td><u>원장</u></td><td>센터장</td></tr><tr><td></td><td>- 생략 -</td><td></td><td></td><td></td></tr></table>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u>원장</u>	센터장		- 생략 -				<table><tr><td rowspan="2">단 위 업 무</td><td rowspan="2">세 부 업 무</td><td rowspan="2">총장</td><td colspan="2">전결권자</td></tr><tr><td><u>처장</u></td><td>센터장</td></tr><tr><td></td><td>(현행과 같음)</td><td></td><td></td><td></td></tr></table>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u>처장</u>	센터장		(현행과 같음)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u>원장</u>	센터장																								
	- 생략 -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u>처장</u>	센터장																						
	(현행과 같음)																									
공아자아카데미	공자아카데미(위치조정) <개정 2026.00.00.>																									
<table><tr><td rowspan="2">단 위 업 무</td><td rowspan="2">세 부 업 무</td><td rowspan="2">총장</td><td colspan="2">전결권자</td></tr><tr><td><u>원장</u></td><td>센터장</td></tr><tr><td></td><td>- 생략 -</td><td></td><td></td><td></td></tr></table>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u>원장</u>	센터장		- 생략 -				<table><tr><td rowspan="2">단 위 업 무</td><td rowspan="2">세 부 업 무</td><td rowspan="2">총장</td><td colspan="2">전결권자</td></tr><tr><td><u>처장</u></td><td>센터장</td></tr><tr><td></td><td>(현행과 같음)</td><td></td><td></td><td></td></tr></table>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u>처장</u>	센터장		(현행과 같음)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u>원장</u>	센터장																								
	- 생략 -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u>처장</u>	센터장																						
	(현행과 같음)																									
	<u><신설></u>	<u>부칙</u>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규정명	현 행	개 정 (안)
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제5조(보직교원의 책임시간 및 감경시간) ① 보직교원의 학기별 책임 및 감경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개 이상의 보직을 겸할 경우 책임시간이 적은 보직을 기준으로 한다. 1. 책임시간 가. 부총장 : 0~3시간(연간) 나. 교무위원 : 3시간(연간 6시간) 다. 창업지원단장, 혁신사업단장, 미래융합대학장, 평생교육원장, 부처장, 산학협력부단장, <u>국제교류원부원장</u>, 스포츠단부단장, 전주 및 진천 RISE사업단 부단장과 본부장 : 4시간(연간 8시간) <이하 생략>	제5조(보직교원의 책임시간 및 감경시간) ① 보직교원의 학기별 책임 및 감경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개 이상의 보직을 겸할 경우 책임시간이 적은 보직을 기준으로 한다. 1. 책임시간 가. 부총장 : 0~3시간(연간) 나. 교무위원 : 3시간(연간 6시간) 다. 창업지원단장, 혁신사업단장, 미래융합대학장, 평생교육원장, 부처장, 산학협력부단장, <u><삭제></u>, 스포츠단부단장, 전주 및 진천 RISE사업단 부단장과 본부장 : 4시간(연간 8시간) <u><개정 2026.00.00.></u> (이하 현행과 같음)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정명	현 행	개 정 (안)
한국어교육지원센터 강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위촉) 강사는 <u>국제교류원장</u> 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촉) 강사는 <u>국제교류처장</u> 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00.00.>
	제6조(위촉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1. 인사서류 부실작성 또는 허위기재로 위촉된 자 2. 현직교사 3. 출강률이 4/5에 미달한 자 4. 강의내용의 불충실, 교수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u>국제교류원장</u> 이 강사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제6조(위촉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1.~3. (현행과 같음) 4. 강의내용의 불충실, 교수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u>국제교류처장</u> 이 강사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26.00.00.>
	제9조(담당시간) ①강사는 주당 14시간을 초과하여 담당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u>국제교류원장</u> 의 승인 하에 초과하여 담당할 수 있다. ②수업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강의 시간 또는 강좌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담당시간) ①강사는 주당 14시간을 초과하여 담당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u>국제교류처장</u> 의 승인 하에 초과하여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②(현행과 같음)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규정명	현행	개정(안)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규정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취업처장, 교학처장, <u>국제교류원장</u>, 기획팀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조개혁 업무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1. 대학평의원회 추천 3인 2. 총학생회 추천 재학생 2인 3. 교직원 대상 공개모집 4인 이내 ②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평의원회 추천 위원의 임기는 추천한 평의원회의 임기 내로 하며, 총학생회 추천 재학생 위원의 임기는 추천한 총학생회 임기로 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당연직 위원 중 총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팀 직원으로 한다.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취업처장, 교학처장, <u>국제교류처장</u>, 기획팀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조개혁 업무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00.00.> 1.~3. (현행과 같음) ②~⑥(현행과 같음)
	<신설>	<u>부칙</u> <u>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정명	현 행	개 정 (안)
국제교류규정	제4조(협정체결 절차) ①본교 학과(부), 센터 등(이하 “당해 부서”라 한다)이 제3조 각호에서 정하는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정추진계획서를 <u>국제교류원장</u>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협정체결은 당해 부서의 장이 <u>국제교류원장</u>과 협의하여 협정문의 초안을 작성하고 <u>국제교류원장</u>은 기획처장과 협의하여 협정문을 확정한다. ③쌍방의 대표가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협정을 체결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통신 수단의 이용 등 기타 방식에 의하여 서명할 수 있다.	제4조(협정체결 절차) ①본교 학과(부), 센터 등(이하 “당해 부서”라 한다)이 제3조 각호에서 정하는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정추진계획서를 <u>국제교류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u>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00.00.> ②협정체결은 당해 부서의 장이 <u>처장</u>과 협의하여 협정문의 초안을 작성하고 <u>처장</u>은 기획처장과 협의하여 협정문을 확정한다. <개정 2026.00.00.> ③쌍방의 대표가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협정을 체결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통신 수단의 이용 등 기타 방식에 의하여 서명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등) ①협정을 체결한 당해 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u>국제교류원</u>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u>국제교류원장</u>은 매 학년도 말에 협정체결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등) ①협정을 체결한 당해 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u>국제교류처</u>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②<u>처장</u>은 매 학년도 말에 협정체결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제7조(서류보관) 협정문 원본 등 교류에 관련된 서류는 <u>국제교류원</u>에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7조(서류보관) 협정문 원본 등 교류에 관련된 서류는 <u>국제교류처</u>에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6.00.00.>
	<u><신설></u>	<u>부 칙</u>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규정명	현행	개정(안)
학생활동 안전관리 규정	제5조(안전관리 책임자) ①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본부, 총학생회 주관행사 : 학생취업처장 2. 학부(과) 주관행사 : 학부(과)장 3. 외국인유학생 주관행사 : <u>국제교류원장</u> 4. 그 밖의 학생활동 : 업무주관 부서장 ②안전관리책임자는 행사를 관리·감독하며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 교육 및 점검을 통하여 행사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책임자는 학생활동 중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책임자) ①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유학생 주관행사 : <u>국제교류처장 <개정 2026.00.00.></u>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u>부칙</u> <u>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국외파견학생규정	제6조(신청절차) 국외파견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아 <u>국제교류원장</u>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외 파견학생 지원서(별지서식 제1호) 2.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2호) 3.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4. 재학증명서 5. 성적증명서	제6조(신청절차) 국외파견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아 <u>국제교류처장(이하 ‘처장’ 이라 한다)</u>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00.00.> 1.~5. 성적증명서
	제7조(선발기준 등) ①국외파견학생은 <u>국제교류원장</u>에서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제7조(선발기준 등) ①국외파견학생은 <u>처장</u>에서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제10조(출국보고) <u>국제교류원장</u>은 국외파견학생의 출국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출국보고) <u>처장</u>은 국외파견학생의 출국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정명	현행	개정(안)
	제11조(귀국보고) 국외파견학생은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귀국하여야 하며, 귀국 후 7일 이내에 소속 학과(부)장을 거쳐 국외파견학생 귀국(예정)신고서(별지서식 제4호)를 <u>국제교류원</u>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귀국보고) 국외파견학생은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귀국하여야 하며, 귀국 후 7일 이내에 소속 학과(부)장을 거쳐 국외파견학생 귀국(예정)신고서(별지서식 제4호)를 <u>국제교류처</u>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제12조(학점인정신청서) ①국외파견학생은 매 학기 종료 후 협정체결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 원본(영문 또는 원문)을 국외 취득학점 인정신청서와 함께 소속학과(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취득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점에 대하여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소속학과(부)장의 동의를 받아 소속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속학과(부)장은 과반수가 참석한 학과(부) 교수회의에서 참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이 학점인정에 동의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국외 취득학점 인정신청서와 함께 <u>국제교류원</u>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학점인정신청서) ①~②(현행과 같음) ③소속학과(부)장은 과반수가 참석한 학과(부) 교수회의에서 참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이 학점인정에 동의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국외 취득학점 인정신청서와 함께 <u>국제교류처</u>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00.00.>

규정명	현행	개정(안)
	제14조(학생지도 및 관리) ①국외파견학생의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협정체결기관과 협의하여 본교의 학칙 또는 협정체결기관의 학칙을 적용한다. ②국외파견학생은 파견기간 중 본교의 승인없이 자의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휴학할 수 없다. ③국외파견학생 및 외국인학생의 지도 및 관리는 국제교류원에서 담당한다. ④국제교류원에서는 국외파견학생 희망자에게 학생교류에 관한 안내, 상담 및 자료를 제공한다.	제14조(학생지도 및 관리) ①~②(현행과 같음) ③국외파견학생 및 외국인학생의 지도 및 관리는 국제교류처에서 담당한다.<개정 2026.00.00.> ④국제교류처에서는 국외파견학생 희망자에게 학생교류에 관한 안내, 상담 및 자료를 제공한다.<개정 2026.00.00.>
	<신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규정명	현 행	개 정 (안)
교내장학금시행규칙	제29조(외국인자비유학생장학금) ①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u>국제교류원</u>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②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외국인자비유학생장학금A : 등록금 감면목적의 장학금 (신설 2025.7.16.) 2. 외국인자비유학생장학금B : 등록금 감면목적 외의 장학금 (신설 2025.7.16.)	제29조(외국인자비유학생장학금) ①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u>국제교류처</u>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②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제31조(자비파견학생장학금)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국외 대학 및 기관 자비파견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u>국제교류원</u>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자비파견학생장학금을 2회까지 지급한다. 단, 공동 및 복수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수학하는 경우에는 4회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자비파견학생장학금)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국외 대학 및 기관 자비파견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u>국제교류처</u>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자비파견학생장학금을 2회까지 지급한다. 단, 공동 및 복수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수학하는 경우에는 4회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원 교류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3조(지원신청 및 수학허가) ①학점교류 지원자(이하 ‘지원자’)는 수강희망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수학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u>국제교류원</u>의 추천에 의한 자는 수학신청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지원신청 및 수학허가) ①학점교류 지원자(이하 ‘지원자’)는 수강희망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수학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u>국제교류처</u>의 추천에 의한 자는 수학신청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규정명	현 행	개 정 (안)
교무위원회규정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총장, 진천부총장, 산학협력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특임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학생취업처장, 사무처장, <u>국제교류처장(신설)</u>, 교육혁신본부장, <u>국제교류원장(삭제)</u>, 산학협력단장, 교양대학장, 교학처장, RISE사업단장, 진천RISE사업단장, 지산학융합원장, 스포츠단장, 기타 총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총장, 진천부총장, 산학협력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특임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학생취업처장, 사무처장, <u>국제교류처장</u>, 교육혁신본부장, 산학협력단장, 교양대학장, 교학처장, RISE사업단장, 진천RISE사업단장, 지산학융합원장, 스포츠단장, 기타 총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0.00.> ②(현행과 같음)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국제교류위원회규정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u>국제교류원장</u>과 글로벌교육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장은 <u>국제교류원장</u>이 되며 부위원장은 글로벌교육지원센터장 <u>및 한국어교육지원센터장</u>이 된다. ③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별지서식 제3호】자기소개서: <u>국제교류원장</u> 귀하 【별지서식 제4호】국외파견학생 귀국(예정)신고서: <u>국제교류원장</u> 귀하 【별지서식 제5호】국외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u>국제교류원장</u> 귀하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u>국제교류처장</u>과 글로벌교육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6.00.00.> ②위원장은 <u>국제교류처장</u>이 되며 부위원장은 <u>글로벌교육지원센터장이</u> 된다. <개정 2026.00.00.> ③(현행과 같음) 【별지서식 제3호】자기소개서: <u>국제교류처장</u> 귀하 【별지서식 제4호】국외파견학생 귀국(예정)신고서: <u>국제교류처장</u> 귀하 【별지서식 제5호】국외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u>국제교류처장</u> 귀하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규정명	현 행	개 정 (안)
교육인프라통합관리위원회규정	제3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사무처장, <u>국제교류원장</u>, 교학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이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사무처장, <u>국제교류처장</u>, 교학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6.00.00.> ③(현행과 같음)
	<신설>	<u>부 칙</u>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어교육지원센터규정	제7조(운영위원회) 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u>국제교류원장</u>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위원은 <u>국제교류원장</u>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u>국제교류처장</u>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개정 2026.00.00.> ③위원은 <u>국제교류처장</u>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00.00.>
	<신설>	<u>부 칙</u>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규정명	현 행	개 정 (안)
공자아카데미규정	제5조(운영위원회) ①아카데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u>국제교류원장</u>, 원장, 평생교육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u>국제교류원장</u>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카데미의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아카데미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아카데미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아카데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①(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u>국제교류처장</u>, 원장, 평생교육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u>국제교류처장</u>이 된다. <개정 2026.00.00.>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정명	현 행	개 정 (안)
한국어교육지원센터규정	제7조(운영위원회) 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u>국제교류원장</u>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위원은 <u>국제교류원장</u>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u>국제교류처장</u>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개정 2026.00.00.> ③위원은 <u>국제교류처장</u>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00.00.>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